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3. 15.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상교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-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-19(COVID-19)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,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-19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적용대상(안 제3조)
- 교육감의 책무 및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(안 제4조 및 제5조)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학생·교직원·학부모 대상 감염병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(안 제7조)
- 감염병대책본부 설치·운영(안 제8조)
-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(안 제9조)
- 등교중지 등(안 제10조)
- 학습 및 돌봄 지원(안 제11조)
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2조)
- 예산 지원(안 제13조)
- 시행규칙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에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,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안 제7조에서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에는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 본부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각급학교의 휴교나 휴업, 등교중지 등 각종 감염병 차단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업, 휴원, 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감이 학생의 학습 및 돌봄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협력체계 구축, 예산지원,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
-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-19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개학 연기, 원격수업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음. 본 조례안은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